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5
----------	----

제출년월일 : 2019. 0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대로 제한내용 완화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례 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우대로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며,
- 일부 내용을 관계법령과 국가인권위원회 주문사항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규정(안 제15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 규정 삭제
(안 제15조)

- 건축물 면적과 분양, 공작물 높이 제한 규정 삭제(안 제15조 1~4호)

나. 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안 제33조의2)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한함),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에 한함),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건축허용

다.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국가인권위원회 주문사항 반영 (안 제22조 제1항2호, 제37조제2호, 별표3, 별표15, 별표18, 별표19)

- 경사도 산정 관계법령 조문에 맞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제1호아목으로 개정(안 제22조제1항2호)
-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물 중 정신병원 삭제(안 제37조제2호)
- 관계법령 개정에 맞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별표3, 별표15, 별표18, 별표19 (별표3제2호차목(3)·(4), 별표15제2호아목(3)·(4), 별표18제2호자목(3)·(4), 별표19제1호자목, 같은 목 (1)·(2), 같은 목 (2) (마), 같은 목 (5) (다)·(라), 같은 목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안 없음(2018.12.13. 주민생활지원과-6742)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018.12.11. 기획감사실-14313)

마. 규 제 심 사 : 비규제 (2018.12.11. 기획감사실-14313)

바. 입 법 예 고

- 예고기간 : 2018.12.13. ~ 2019.01.03. (20일간)

- 의견제출 : 2건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의 운영자 명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결과보고 및 처리계획 내부결재 (2019.01.10. 도시주택과-3645)

사. 법 제 심 사

- 결과통보 (2019.01.15. 기획감사실-710)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4에서 정해지는 사항 삭제 권고

- 결과반영 : 안 제33조의2

아. 조 례 · 규 칙 심 의 회

- 원안의결 (2019.02.01. 기획감사실-1545)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

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

제22조제1항제2호 중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8호”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아목”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8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시설은 별표 23

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37조제2호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차목(3) 및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아목(3) 및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8 제2호자목(3) 및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자목, 같은 목 (1)·(2), 같은 목 (2)(마) 및 같은 목 (5)(다)·(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 (5)(라)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목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 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 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 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 터 이하인 것</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 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 층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 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 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 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더목, 거목 및 러목은 제외한 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p>	<p>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 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 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 다)로서 3층 이하인 것</p>

4. 공작물(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22조① (생략)

1. (생략)
2. 경사도가 25도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

3. (생략)

② (생략)

<신 설>

4. 공작물

제22조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아목-----.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8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시설은 별표 23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p>제37조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의료시설 중 <u>정신병원 및 격리병원</u> 3. ~ 11. (생략) 	<p><u>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5호가목에 따른 <u>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u> <p>제37조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u>격리병원</u> 3. ~ 11.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⑤법 제4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8조의4(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

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물환경보전법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도시주택과장 주 현 관
연락처	(033) 330 - 2470